

중소 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

- (목적)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방송광고 업계의 동반 성장과 건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광고대행자(이하 “광고대행자”)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이하 “중소 PP”)간 방송광고료의 지급기한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(적용범위)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광고대행자 및 이들과 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 PP를 대상으로 한다.
 - 위에서의 광고대행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였거나 향후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 - 위에서의 중소 PP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갖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거나 종합편성·보도·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.
- (기본원칙) 광고대행자는 중소 PP의 방송광고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방송광고를 한 당해 월의 말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4개월 이내 현금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한다.
- (협조사항)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(주)미디어크리에이트는 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‘추가 지급보증’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가이드라인은 ‘13. 1. 1부터 시행한다.
- (재검토 기한)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